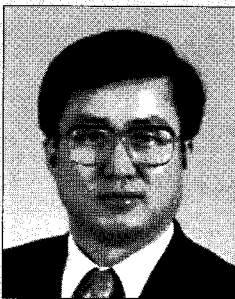


#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김병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 머리말

오늘날 “규제개혁”은 전 세계적인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개도국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지 않고서는 국경없는 대경쟁(mega competition)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중에 있고, OECD에서도 2년간의 연구·검토 끝에 규제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하순 개최된 각료이사회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7개항의 권고를 채택하고 앞으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추진상황을 검토·평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일반화 되었고 이는 많은 규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는 60~70년대의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식으로서 고도성장애 크게 기여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개방화·국제화된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정부규제가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규제개혁 추진실적

### 1988~1992 기간 중의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988년부터 국민경제상 비중이 크고 경쟁제한적 요인이 많은 23개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예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류, 정유 등 10개 산업을 규제완화대상 산업으

로 선정하고 경쟁촉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89년에는 해운, 버스 여객운송 등 8개 산업을 규제완화대상 산업으로 추가 선정하여 이들 18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90년 4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 총무처차관)를 두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90년에 주류, 석유산업 등 21개 산업, '91년에 해운, 원양어업, 건설 등 20개 산업에 대하여 신규진입 제한의 철폐, 판매지역 제한의 철폐 등의 규제완화조치를 취하였다.

'91년 9월에는 규제완화시책에 민간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자문기관으로 전경련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92년 3월에 제출한 「행정규제완화에 관한 건의」를 통하여 총 649건에 달하는 규제완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소관 부처별로 검토한 결과 370건을 수용하여 개선한 바 있다.

'92년 하반기에는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원)이 중심이 되어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제조업분야의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행정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업활동 단계별로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였다. 공장설립절차, 법적의무고용, 산업안전, 근로기준, 수출입절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총 11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91개의 과제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 현정부 출범 후의 규제개혁

'93년 2월 출범한 현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개혁의 중요과제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93년 3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였고, '93년 5월에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시켰다. 이어 '93년 6월에는 의원입법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상공자원부(현 통상산업부)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들 규제개혁추진기구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97년 5월까지 총 5,700여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2,500여건의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 경쟁제한법령 정비차원에서 '95년에 30개법령 36개과제의 개선방안을 상정하였고, '96년에는 통신, 건설, 에너지분야의 28개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정하였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96년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기업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기업의 고충처리를 위주로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96년말까지 53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행정쇄신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역점

을 두어 96년말까지 약 2,300여건의 과제를 개선하였다.

이처럼 현정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가 많은 건수의 규제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규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작업이 주로 행정절차 간소화나 순위운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특정산업의 진입제한이나 금융, 토지 이용 등 주요정책과 관련된 핵심규제는 손대지 못하였고, 또한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규제를 개혁하는 데 따른 한계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이익집단 등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새 내각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97년 3월 출범한 현 내각은 앞에서 지적한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97년 4월 2일 확정·발표된 정부의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의하면 종전의 다원화되어 있던 규제개혁추진기구들을 개편하여, 규제개혁의 최고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운영하고, 경제적 규제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일반행정규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이 회의에 상정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의장이며, 위원으로는 정부측에서 경제부총리, 통상산업부·총무처 장관,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 6명이, 민간위원으로는 행정쇄신

위원회 위원장,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장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종전 재정경제원이 관장하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구성도 새롭게 하였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정부측에서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총무처 차관, 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 제2행정조정관 등 5명, 민간에서 학계, 언론계, 경제단체,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선임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규제개혁추진회의」 및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한 것은 피규제자인 민간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재정경제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은 특정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경쟁촉진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27명의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된 「경제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작업단은 세부과제별로 민간전문가 및 정부관련부처 공무원들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 최근의 경제규제개혁 추진현황

정부는 경제활력회복과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10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하에 3차에 걸쳐 약 30개 세부과제의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개혁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기업창업 및 공장입지 관련규제 완화

-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제외)에 건축가능한 비공해 제조장의 규모를 200㎡(60평) 미만에서 500㎡(150평)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소규모공장건설을 용이하게 함.
-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수도권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동지구내에서는 개별공장의 입지규모제한을 철폐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되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

### ● 진입규제 완화

- 전력산업에 있어서 민자발전사업자의 전기직공급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소매분야에 경쟁을 도입
- 2001년부터 LNG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하여 LNG 대량수요자들의 직수입을 허용
-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 축산업(양돈·양계업)의 허가제·등록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양돈업 진입규제를 철폐
- 양곡도정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국외항공노선 운항의 진입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개정

### ● 물류시설 관련규제 완화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의 입주제한을 완화
- 녹지지역내 창고시설의 건축제한 완화
-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촉진
-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
-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 기업자금조달 관련규제 완화

- 회사채발행 물량조정제도 폐지
- 유상증자발행요건 완화(배당성향요건 폐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증자제한을 5대로 완화

### ● 품질인증·검사제도 개선

- 자동차 안전검사제도 개선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연장(최초 3년 → 4년)

- 2000년대초부터 출고 전 검사체제를 출고 후 제작결합시정제도(리콜제도)로 전환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

- 인증시험 전 사전검사제도 폐지 및 현재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출가스시험을 제작자의 자체시험으로 대체

○ 열사용 기자재(산업용 보일러등) 검사제도 개선

-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험회사의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한 검사를 면제

앞에서 열거한 기확정된 개혁과제 이외에 6월 말경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일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할 우선추진 과제로는 건축심의절차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입찰보증금 제도 개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영업활동제한 완화, 건설업체의 건축설계분야 진입제한 완화 등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추진계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우선추진과제 위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핵심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개 핵심분야는 토지이용, 물류·운수, 건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환경,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카르텔제도 정비 등이다. 이들 분야 이외에도 국민이나 기업등으로부터 건의된 상황에 대한 규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일시적으로 단기간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법안은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법이 제정·시행되면 신설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규제개혁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혁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맺음말**

규제개혁은 그 규제로 인해 이익이나 혜택을 누리던 집단이나 계층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막상 자기들의 이해와 관련될 때는 집단적인 저항과 반발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되는데, 이러한 집단이기주의가 규제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이익집단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저항때문에 다수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규제개혁이 좌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다수의 적극적인 지지와 소수 이익집단의 저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